

의안번호	2212203
의 퇴 인	서영교 의원
회 답 일	2025. 10. 20.
추 계 번호	25F4422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지방세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는 2026년 270.7억원, 2027년 270.2억원 등 2026년에서 2027년까지 2년간 총 540.9억원(연평균 270.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- 사회복지법인 등의 사회복지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: 2년간 -50.6억원(연평균 -25.3억원)
 - 사회복지법인 등의 사회복지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연장: 2년간 -377.8원(연평균 -188.9억원)
 - 사회복지법인 등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사회복지시설 주민세 면제 연장: 2년간 -80.2억원(연평균 -40.1억원)
 - 사회복지법인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사회복지시설 경영자에 대한 주민세 면제 연장: 2년간 -32.3억원(연평균 -16.2억원)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27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누적	연평균
사회복지법인 등의 사회복지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22조제1항)	-25.3	-25.3	-50.6	-25.3
사회복지법인 등의 사회복지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22조제3항)	-188.9	-188.9	-377.8	-188.9
사회복지법인 등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사회복지시설 주민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(안 제22조제5항)	-40.1	-40.1	-80.2	-40.1
사회복지법인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사회복지시설 경영자에 대한 주민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(안 제22조제7항)	-16.4	-15.9	-32.3	-16.2
합 계	-270.7	-270.2	-540.9	-270.5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2조제1항 (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)	○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－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7.12.31.	
2	안 제22조제3항 (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)	○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－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7.12.31.	
3	안 제22조제5항 (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)	○ 사회복지법인 등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사회복지법인등의 주민세 사업소분 면제의 적용기한 2년 연장 －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7.12.31.	
4	안 제22조제7항 (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)	○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·합병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사회복지시설 경영자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면제의 적용기한 2년 연장 －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7.12.31.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22조제1항 (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)	○	
2	안 제22조제3항 (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)	○	
3	안 제22조제5항 (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)	○	
4	안 제22조제7항 (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2025년 중 통과되어 감면의 세수효과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발생한다고 가정
- (안 제22조제1항) 사회복지법인 등의 사회복지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2022년 말 법률 개정에 따라 감면대상이 확대되고 대상별로 취득세 감면율을 차등화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, 법률 개정 이후인 2023년 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2023년 취득세 감면실적: 25.3억원
- (안 제22조제3항) 2022년 말 법률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 감면 대상별로 재산세 감면율을 차등화하고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여부가 달라졌으므로, 사회복지법인 등의 사회복지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법률 개정 이후인 2023년 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2023년 재산세 감면실적: 174.6억원
 - 2023년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실적: 14.3억원
- (안 제22조제5항) 2022년 말 법률 개정에 따라 감면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주민세 감면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므로, 사회복지법인 등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사회복지시설 주민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법률 개정 이후인 2023년 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2023년 등록면허세 감면실적: 0.3억원
 - 2023년 주민세 감면실적: 39.8억원
- (안 제22조제7항)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·합병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에 대한 주민세(사업소분) 감면규정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
 - (등록면허세)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므로, 최근 5년간 연평균 등록면허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
- 최근 5년간 등록면허세 연평균 감면액: 0.4억원
- (주민세) 2019년 20.3억원에서 2023년 17.5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
이므로, 2023년 실적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감면액 증감률에 따
라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가정
- 최근 5년간 주민세 연평균 증감률: -2.9%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사회복지법인 등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
(안 제22조제1항)

(1)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

- (제도개요) 사회복지법인 등이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1호¹⁾에 따른
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
 - 감면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7.12.31.
 - 감면대상: (~2022년)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
지원대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
→ (2023년 이후)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
 - 감면율: (2011~2019년) 100% → (2020~2022년) 85% → (2023년 이후) 100% 또는 25%
 - 2022년 말 세법개정에 따라 ① 사회복지법인 또는 한센인 권익·복지의 증진·개
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·단체의 경우 취득세의 100%를, ② 사회복지시설
을 설치·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
해서는 취득세의 25%를 감면하는 것으로 변경
- (추계방법) 동 규정에 따른 감면실적은 2019년 40.9억원에서 2023년
25.3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, 2022년 말 법률 개정²⁾에 따라 감면대상
이 확대되고 대상별로 취득세 감면율을 차등화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
로, 법률 개정 이후인 2023년 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2023년 취득세 감면실적: 25.3억원

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, 「아동복지법」, 「노인복지법」, 「장애인복지법」 등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
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함

[표 2] 사회복지법인 등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 추이: 2019~2023년
(단위: 억원)

	2019	2020	2021	2022	2023
감면실적	40.9	39.7	46.7	27.9	25.3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.

(2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할 경우, 취득세는 2026년 25.3억원, 2027년 25.3억원 등 2026년에서 2027년까지 2년간 총 50.6억원(연평균 25.3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27년, 취득세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누적	연평균
사회복지법인 등의 사회복지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(안 제22조제1항)	-25.3	-25.3	-50.6	-25.3

나. 사회복지법인 등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(안 제22조제3항)

(1) 제도개요 및 추계방법

- (제도개요) 사회복지법인 등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
 - 감면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7.12.31.
 - 감면대상: (~2022년)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지원대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→ (2023년 이후)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
 - 감면율: (2011~2019년) 100% → (2020~2022년) 85% → (2023년 이후) 25~100%
 - 2022년 말 세법개정에 따라 ① 사회복지법인 또는 한센인 권익·복지의 증진·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·단체의 경우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100%를, ②

사회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25%(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가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50%)를 감면하는 것으로 변경

□ (추계방법) 동 규정에 따른 감면실적은 2019년 225.9억원에서 2023년 188.9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, 이는 2022년 말 법률 개정에 따라 감면 대상별로 재산세 감면율을 차등화하고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여부를 달리 하도록 한 것에 기인하므로, 법률 개정 이후인 2023년 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- 2023년 재산세 감면실적: 174.6억원
- 2023년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실적: 14.3억원

[표 4] 사회복지법인 등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실적 추이: 2019~2023년
(단위: 억원)

	2019	2020	2021	2022	2023
감면실적	225.9	197.0	205.0	220.0	188.9
－ 재산세	207.5	178.7	187.0	201.1	174.6
－ 지역자원시설세	18.4	18.3	18.0	18.9	14.3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

(2) 추계결과

□ 개정안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할 경우, 취득세는 2026년 188.9억원, 2027년 188.9억원 등 2026년에서 2027년까지 2년간 총 억원(연평균 188.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27년, 지방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누적	연평균
사회복지법인 등의 사회복지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22조제3항)	-188.9	-188.9	-377.8	-188.9
－ 재산세	-174.6	-174.6	-349.2	-174.6
－ 지역자원시설세	-14.3	-14.3	-28.6	-14.3

다. 사회복지법인 등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
(안 제22조제5항)

(1) 제도개요 및 추계방법

□ (제도개요)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주민세(사업소분 및 종업원분) 100% 감면

- 감면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7.12.31.
- 감면대상: (~2022년)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지원대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
→ (2023년 이후)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
- 단, 동 조항에 따라 감면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은 「지방세법」 제81조제1항 제2호(연면적에 대한 세율)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에 한함

□ (추계방법) 2022년 말 법률 개정에 따라 감면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주민세 감면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, 법률 개정 이후인 2023년 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- 2023년 등록면허세 감면실적: 0.3억원
- 2023년 주민세 감면실적: 39.8억원

[표 6] 사회복지법인 등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 감면실적 추이: 2019~2023년
(단위: 억원)

	2019	2020	2021	2022	2023
감면실적	25.8	21.4	23.0	24.5	40.1
－ 등록면허세	0.4	0.2	0.3	0.3	0.3
－ 주민세	25.4	21.2	22.7	24.2	39.8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

(2) 추계결과

□ 개정안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사회복지법인 등의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면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는 2026년 40.1억원, 2027년

40.1억원 등 2026년에서 2027년까지 2년간 총 80.2억원(연평균 40.1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7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27년, 지방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누적	연평균
사회복지법인 등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사회복지시설 주민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(안 제22조제5항)	-40.1	-40.1	-80.2	-40.1
- 등록면허세	-0.3	-0.3	-0.6	-0.3
- 주민세	-39.8	-39.8	-79.6	-39.8

라.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
(안 제22조제7항)

(1) 제도개요 및 추계방법

□ (제도개요)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·합병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에 대한 주민세(사업소분) 100% 감면

- 감면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7.12.31.
- 단, 동 조항에 따라 감면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은 「지방세법」 제81조제1항 제1호(기본 세율)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에 한함

□ (추계방법)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·합병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에 대한 주민세(사업소분) 감면규정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

- (등록면허세)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므로, 최근 5년간 연평균 등록면허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최근 5년간 등록면허세 연평균 감면액: 0.4억원
- (주민세) 2019년 20.3억원에서 2023년 17.5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므로, 2023년 실적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감면액 증감률에 따라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가정
 - 최근 5년간 주민세 연평균 증감률: -2.9%

[표 8] 사회복지법인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 감면실적 추이: 2019~2023년
(단위: 억원)

	2019	2020	2021	2022	2023
감면실적	20.9	20.5	17.7	16.9	17.5
－ 등록면허세	0.6	0.2	0.5	0.6	0
－ 주민세	20.3	20.3	17.2	16.4	17.5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

(2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는 2026년 16.4억원, 2027년 15.9억원 등 2026년에서 2027년까지 2년간 총 32.3억원(연평균 16.2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9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27년, 지방세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누적	연평균
사회복지법인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사회복지시설 경영자에 대한 주민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(안 제22조제7항)	-16.4	-15.9	-32.3	-16.2
－ 등록면허세	-0.4	-0.4	-0.8	-0.4
－ 주민세	-16.0	-15.5	-31.5	-15.8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신미정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미정	02-6788-4837	mjshin@assembly.go.kr